

주요 변동내용 안내

※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예정인원 : 29명 증원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구분모집	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도내거주자	해당 시·군거주자
계						738→758명 (전국6명 포함)	195→204명
제1회 임용시험						647→664명 (전국4명 포함)	186→194명
제1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8급	간호	간호	일반	보은군14(7→14)	
			9급	행정	일반행정	일반	
		농업		축산	일반	보은군1(0→1)	
		녹지 시설		산림자원	일반	보은군2(0→2)	
				일반토목	일반	괴산군6(3→6)	
		지적	일반	충주시2(1→2)			
	경력 경쟁	9급	공업	일반전기	일반	도일괄1(0→1)	
			의료기술	의 료 기 술	임상병리사	일반	충주시1(0→1) 보은군1(0→1)
제2회 임용시험						41→42명 (전국2명 포함)	9명
제2회 임용시험	경력 경쟁	9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일반	도일괄1 ※청사시설관리 등 현장업무를 직접 수행	
제3회 임용시험						50→52명	0→1명
제3회 임용시험	경력 경쟁	9급	시설	일반토목	기술계고		충주시1(0→1명)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일반	옥천군2(0→2명)

※비 고

5) 기술계고 구분모집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은 “학교소재지가 충청북도 또는 모집단위의 거주지제한 요건” 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수의7급(선발예정인원 1회 10명, 2회 7명)의 경우 별도 공고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

○ 시험과목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2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경력 경쟁	9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한국사, 사회
제3회 임용시험					
제3회 임용시험	경력 경쟁	9급 (기술계고)	시설	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비 고

- 4)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가 가능한 시험과목은 위탁 출제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공개로 설정한 시험과목만 시험종료 후 본인의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방재안전 직류(7·9급)의 시험과목 출제범위를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 ※ 2019년부터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에서 출제됩니다.

○ 응시자격

시험명	종류	계급	직렬	직류	응시자격
제2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경력 경쟁	9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조경기능사 소지자로 조경기능사 취득 후 해당(조경)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조경산업기사·기사·기술사 소지자
제3회 임용시험					
제3회 임용시험	경력 경쟁	9급 (기술계고)	시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기술계고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수급·보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구분모집에도 응시 자격이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6) 기술계고 구분모집 응시자격, 학교장 추천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기술계고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요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의 추천서는 추천요령에 따라 해당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의 심사를 받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